

##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 4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8. 2. 05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개정이유

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(2005.12.30.)에 따라 기금 운용관을 변경하여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함

- (1) 규정에 의거(의한) ⇒ 에 따라(따른) (안 제1조, 제7조제1호)
- (2) 각호 ⇒ 각 호,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  
(제2조 본문, 제3조 본문, 제4조제3항, 제7조 본문, 제6조 본문)
- (3) 때 ⇒ 경우(안 제6조제1호·제2호)
- (4) 기타 ⇒ 그 밖에(안 제7조제3호)
- (5) 매 회계연도마다 ⇒ 회계연도마다, 3월 ⇒ 3개월(안 제13조)
- (6) 범위 내에서 ⇒ 범위에서(안 제14조)

나. 기금운용관을 변경 함(안 제12조)

- 부군수 ⇒ 종합민원실장

다.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수정함(안 제12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 
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(2005.12.30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그 밖 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71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71조에 따라”로, “거창군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거창군 식품진흥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”를 “거창군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제1호 중 “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, 제4조제3항, 제7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거창군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”를 “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제1호·제2호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부군수를”을 “종합민원실장을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매 회계연도마다”를 “회계연도마다”로, “3월”을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<u>거창군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</u>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71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<u>거창군 식품진흥기금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<u>다음 각호의 재원으로</u> 충당한다.</p> <p>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<u>거창군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u></p> <p>1. -- 제65조에 따라 ----- 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기금의 사용용도) 기금은 <u>다음 각호의 용도에</u> 사용한다. 다만, 식품위생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광역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사용용도)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운영위원회 구성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거창군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	<p>제4조(기금운영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거창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</u>----- -----.</p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<u>각호</u>의 자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<u>각 호</u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<u>각호</u>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</p> <p>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,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</p> <p>2.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</p>	<p>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----- -----<u>각 호</u>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 -----</p>
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<u>제3조의 규정에 의한</u> 기금의 사용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)----- <u>각 호</u>-----.</p> <p>1. <u>제3조에 따른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12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<u>부군수</u>를 기금 운용관으로,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</p>	<p>제12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----- -----<u>종합민원실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②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) 기금운용관은 <u>매 회계연도마다</u>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<u>3월</u>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) - -----<u>회계연도마다</u>----- -----<u>3개월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실비보상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<u>범위</u> <u>내</u> <u>에서</u>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4조(실비보상) ----- -----<u>범위에</u> <u>서</u>----- ----- -----.</p>